

동탄 그웬 160(동탄2 B11BL) 입주자모집공고(정정)



※ 2026년 4월 16일(목) 공고한 ‘동탄 그웬 160 (동탄2 B11BL) 입주자 모집공고’ 를 2026년 4월 24일(금)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 본 입주자모집공고 8-Page
- 변경 전)

약식 표기	동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계약시	중도금 (60%)						잔금 (35%)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분양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102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1층	33	294,016,502	705,439,544	70,543,954	1,070,000,000	53,5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374,500,000
102P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4층	34	294,016,502	725,439,544	72,543,954	1,092,000,000	54,6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382,200,000
108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2층	33	311,130,192	508,063,462	50,806,346	870,000,000	43,5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304,500,000
		3층	34	311,130,192	508,063,462	50,806,346	870,000,000	43,5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304,500,000
115	3745	1층	1	329,677,539	746,474,965	74,647,496	1,150,800,000	57,54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402,780,000
115P	3745	4층	1	329,677,540	796,474,964	79,647,496	1,205,800,000	60,29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422,030,000
116T	3742,3743,3744, 3747,3748,3749	T층	22	333,331,884	496,971,015	49,697,101	880,000,000	44,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308,000,000
118	3745	2층	1	338,120,038	551,981,784	55,198,178	945,300,000	47,265,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330,855,000
		3층	1	338,120,038	551,981,784	55,198,178	945,300,000	47,265,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330,855,000

- 변경 후) 추가 기재 : 116T타입의 경우 T층으로 표기되나 당첨동호는 해당 층수인 T층이 아닌 99층으로 안내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예시 : 116T타입 3742동 T01호 당첨 시 당첨 동호수는 “3742동 9901호” 로 표기)

2. 본 입주자모집공고 57-Page [테라스(102, 115, 116T 주택형), 옥상(102P, 115P 주택형), 썬큰(116T)]

- 변경 전) 미기재
- 변경 후) 추가 기재 : 옥실 환기시설, 통기배관 등은 각 라인별 옥상 공용부 및 조경부에 설치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072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화성특례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4.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채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16.(목)	2026.04.27.(월)	2026.04.28.(화)	2026.04.29.(수)	2026.05.07.(목)	2026.05.09.(토)~ 2026.05.14.(목)	2026.05.18.(월)~ 2026.05.20.(수)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제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가입
세대주 요건	-	필요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제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동탄gwen160.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최하층 우선배정은 5층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본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하층 주택의 분양가격이 상층 주택보다 높아 최하층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탈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당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6.(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 우선 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특례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5.04.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27.(월)	2026.04.28.(화)	2026.04.29.(수)	2026.05.07.(목)	2026.05.09.(토)~ 2026.05.14.(목)	2026.05.18.(월)~ 2026.05.20.(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화성특례시 영천동 863-5)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운영 시간 : 10:00 ~ 17:0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 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으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은 3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거주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 ※ 본 공동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5.07.(목))로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계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제3호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	3년 (단,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전매 금지,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화성특례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인지하여야 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특례시 주택정책과 -- 8692 호(2026.04.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B11BL (신동 720), 대지 면적 : 23,292.5㎡
- 공급규모 : 공동주택(연립주택) 지하1층, 지상 4층, 9개동 총 160세대 중 일반분양 139세대 [특별공급 21세대(다자녀 16세대, 노부모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2026000113	01	102.7378	102	102.7378	21.8520	124.5898	92.0868	216.6766	137.1787	33	4	1	5	28
	02	102.7378P	102P	102.7378	21.8520	124.5898	92.0868	216.6766	137.1787	34	3	1	4	30
	03	108.7178	108	108.7178	23.0694	131.7872	97.4469	229.2341	145.1634	67	7	2	9	58
	04	115.1988	115	115.1988	24.3814	139.5802	103.2560	242.8362	153.8170	1	-	-	-	1
	05	115.1988P	115P	115.1988	24.3814	139.5802	103.2560	242.8362	153.8170	1	-	-	-	1
	06	116.4757T	116T	116.4757	23.2520	139.7277	125.1418	264.8695	155.5220	22	2	1	3	19
	07	118.1488	118	118.1488	25.3227	143.4715	105.9002	249.3717	157.7560	2	-	-	-	2
합 계										160	16	5	21	139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102.7378	102.7378P	108.7178	115.1988	115.1988P	116.4757T	118.1488
건본주택 등 약식 표기	102	102P	108	115	115P	116T	118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으로 청약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명과 상이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건본주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102	102P	108	116T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시·도(화성특례시 1년 이상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50%	2	2	4	1	9
	기타 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인천거주자): 50%	2	1	3	1	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2	1	5
합 계		5	4	9	3	2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 (35%)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분양가	계약시	10%	10%	10%	10%	10%	10%	입주시
102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1층	33	294,016,502	705,439,544	70,543,954	1,070,000,000	53,5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374,500,000
102P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4층	34	294,016,502	725,439,544	72,543,954	1,092,000,000	54,6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109,200,000	382,200,000
108	3741,3742,3743, 3744,3745,3746, 3747,3748,3749	2층	33	311,130,192	508,063,462	50,806,346	870,000,000	43,5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304,500,000
		3층	34	311,130,192	508,063,462	50,806,346	870,000,000	43,5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304,500,000
115	3745	1층	1	329,677,539	746,474,965	74,647,496	1,150,800,000	57,54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115,080,000	402,780,000
115P	3745	4층	1	329,677,540	796,474,964	79,647,496	1,205,800,000	60,29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120,580,000	422,030,000
116T	3742,3743,3744, 3747,3748,3749	T층	22	333,331,884	496,971,015	49,697,101	880,000,000	44,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308,000,000
118	3745	2층	1	338,120,038	551,981,784	55,198,178	945,300,000	47,265,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330,855,000
		3층	1	338,120,038	551,981,784	55,198,178	945,300,000	47,265,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94,530,000	330,855,000

※ 116T타입의 경우 T층으로 표기되나 당첨동호는 해당 층수인 T층이 아닌 99층으로 안내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예시 : 116T타입 3742동 T01호 당첨 시 당첨 동호수는 “3742동 9901호” 로 표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는 주택형별, 층별, 동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동탄gwen160.com>) 등에서 공급가격, 동·호배치도, 주택형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있는 3745동은 필로티 공간을 2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기타 체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분양대금의 5%)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또는 신용·규제 등으로

-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납부 일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인체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구분</th> <th style="width:50%;">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style="text-align:center;">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center;">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구분</th> <th style="width:50%;">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style="text-align:center;">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center;">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유의사항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 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 (화성특례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 지역 거주자 50%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 단, 해당 시·도 경쟁 발생시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특례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은 주택은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거주자에 공급. 화성특례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기타지역 물량에서 다시 경쟁 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② 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선정방법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4-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특례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화성특례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부양가족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소유 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시 무주택) 미적용)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추첨제(100%)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화성특례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50%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	100%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	1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불인정)”,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일기준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등)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전매 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05.07.(목))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단,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입신부부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제출 등),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는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서서류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거주 의무 안내

-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 의무 개시일은 거주 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거주 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거주 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 의무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 의무대상자 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본인 기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본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등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지축 사용 제한 등)]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동 · 호 주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홈페이지(<https://www.동탄gwen160.com>)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이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 내 부적격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주첨 ·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주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 유지기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주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주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주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주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주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주첨으로 선정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6.04.27.(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앱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 화성특례시 동탄구 영천동 863-5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6.04.28.(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04.29.(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p>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등·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26.05.07.(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청약홈</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td> </tr> </table>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기간 : 2026.05.07.(목) ~ 2026.05.16(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5.0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일반공급)	2026.05.09.(토) ~ 2026.05.14.(목) 6일간 10:00 ~ 17:00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영천동 863-5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 당첨자 서류제출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소명기간 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당첨자(예비당첨자의 경우 해당기간 별도 안내)는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서류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후 자격검증을 완료한 당첨자에 한함)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추첨 및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호추첨 일정에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공통서류	○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출산특례 관련] ’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O	배우자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O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특례 적용 대상자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 관련] ’ 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O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해외근무자 (단신부입)입증 서류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 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O		청약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자는 1961.1.1.로 지정)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반드시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 추가 확인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개명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O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O	해당 주택에 대한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6.(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로서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공통	O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전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복부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입중 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6.(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 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로서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장소	비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6.05.18.(월) ~ 2026.05.20.(수) 3일간 10:00 ~ 17:00	「동탄 그웬 160」 전분주택 :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구 영천동 863-5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

※ 공급계약 체결은 반드시 계약 기간 내 당첨자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현장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계좌이체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통 제출 (발급기준: 본인 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1통,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용 1통 / 제출처 : (주)한토건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계약 불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미제출 사유서 및 증빙서류 포함)		• 공동주택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O		본인 계약 시 서류 일체	계약자	※ 대리인 계약 시에는 본인 계약 시 구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2통 제출 (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 1통,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 위임용 1통 / 제출처 : (주)한토건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인감증명서(본인발급)만 가능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견본주택 비치)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 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26.05.18.~05.20.) 및 시간(10:00~17:00) 내 방문 및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26.05.18.~05.20.) 및 시간(10:00~17:00) 내 방문하지 않거나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의 주택소유 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공급자격 및 선정순위를 검증하며,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전산검색 결과 또는 제출서류 확인 결과 자격요건이 상이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하여야 합니다. - 소명 결과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도 계약이 취소되고 같은 규칙에 따른 청약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소명한 결과 같은 순위에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당첨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공동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제외)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p>※ 예비입주자의 경우 신청 자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고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p>
<p>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p>	<p>-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p> <p>-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p>	<p>-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p> <p>※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p> <p>-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체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p>
<p>기타 계약체결조건</p>	<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공동주택 공급, balconi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포함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시는 당첨자분들께서는 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비고</p>	<p>-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p> <p>-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p> <p>-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p>

-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입주금(잔금)	광주은행	1107-021-922881	코리아신탁(주)

-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자는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및 입주금(잔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 가능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 사항

- 중도금 대출 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분양대금의 5%(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선납한 경우 해당 선납금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모든 위험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이며,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 및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미진행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 5%)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본인(법정 성년후견인 포함) 외에는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출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 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 및 건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사 겸 시공자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에 따름)

대상증서	1. 공급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2.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 도급 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예시 :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각 1회 총 3회 납부)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계약자는 인지세의 1/2을 납부하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이를 포함한 인지세 전액을 일괄 납부 2.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2024.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인 (주)한도건설과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부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계약서 1통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를 계약자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계약자는 인지세의 1/2 해당 금액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계약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인지세 전액을 일괄 납부합니다.
- ※ 계약 체결 이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으로 인하여 인지세 변동(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한 인지세 역시 계약자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계약자는 증가분의 1/2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최초 분양계약 이후 발생하는 분양권 전매 등 개별 계약에 대한 인지세는 해당 계약 당사자 간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부담액(1/2)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 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관련

- 화성특례시에서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화성특례시 고시 제2024-814호 (2024. 10. 11.)]’ 를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는 골조공사 완료 후 또는 공정률이 60%이상인 경우, 매 분기 종료되는 날 15일 전까지 시행위탁자 겸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참여형 감리보고제’ 를 신청하여 분기별 감리 수행내용의 설명을 청취하고 건의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입주예정일 : 2028년 02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45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사전 방문점검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한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각종 파업(당해 건설공사 진행에 연관된 각종 생산활동 및 업무 중단 등), 원자재 수급지연(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지연 등)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 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 등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대납이자) 납부영수증 등) “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공동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공과금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만으로도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계약자(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 전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예정인 세대는 중도금 대출 상환 및 분양대금 및 제반비용 전액 납부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약속서(당사 양식) 작성 및 관리사무소 세대 검침 후 공사 시작이 가능합니다.(인테리어 공사는 공동주택 준공일 및 잔금납부 이전에는 불가능함)
-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독단으로 견본주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여 견본품목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고발조치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시행자 겸 시공사의 승인하에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세대에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 부과가 시작되며, 공사 진행 중 매일 세대 열쇠 반납 및 수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1개소,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운동시설(옥외)

* 골프연습장에 설치될 시설물[스크린 타석 일반3개, 양손 1개]은 추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문화시설[다목적실(여성공동작업장) 1개소]
- 주민기타시설[관리사무실(1개소), 어린이놀이터(1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 부대복리시설 구성 및 면적은 인허가 등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합니다.
- 하자보수 시, 당초 시공된 마감재 및 재료 등을 통해 보수가 진행됩니다.(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및 보상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11 발코니 확장 안내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안내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입주시
102	6,439,000	1,287,800	5,151,200
102P	6,109,000	1,221,800	4,887,200
108	4,037,000	807,400	3,229,600
115	7,582,000	1,516,400	6,065,600
115P	8,722,000	1,744,400	6,977,600
116T	4,209,000	841,800	3,367,200
118	5,743,000	1,148,600	4,594,4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922897	코리아신탱(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건본주택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겸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 및 모델은 품질, 품귀, 생산·공급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건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 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세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와 무관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은 입주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십시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마이너스옵션 안내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타일, 창호 등)에서 계약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문선 포함), 문짝,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PL창호, 실외기 그릴창, 욕실문틀 하부씰, 방화문틀 및 문짝(도어록포함), 목문가틀
②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 디딤판, 마루귀틀), 발코니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콘크리트 먼처리 또는 시멘트 몰탈(해당부위), 월패드, 에어컨냉매배관, 발코니도장
④ 천장	천정지, 반자돌림(몰딩)	천장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소방 스프링 쿨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관 및 디퓨저(욕실제외), 발코니 천장도장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욕실장,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콘센트	시멘트 벽돌(해당부위),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룩탑, 렌지후드, 상판, 일반배수구), 벽타일, 설비수전류, 악세사리 일체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⑧ 가구류 및 기타	신발장, 드레스룸 가구, 붙박이장, 화장대장, 수납선반, 세탁기 선반 등 세탁 수전, 손빨래 수전 및 발코니 수전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마감재 리스트 품목에 준합니다.(마감재 리스트는 동탄 그웬 160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102	102P	108	115	115P	116T	118
금액	41,394,000	41,394,000	41,888,000	44,365,000	44,365,000	44,412,000	45,602,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과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상호 병행 적용이 불가하며, 해당 옵션의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 등의 사유로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 및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주택형별 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준공 후 키햄출 개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세대 관리의 책임이 계약자(소유주)에게 있으며, 미시공 상태로 인한 정전, 누수, 누전, 우수 범람 등 각종 사고 및 피해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이 계약자(소유주)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에만 가능하오니, 이 점을 감안하여 품목 선택 및 입주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공사는 소음 및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와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마이너스 옵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금액 미만의 경우에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한 시공을 권장합니다.
- 하자 보호를 위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는 계약자(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소방시설, 단열, 방수, 전기 및 설비 배관 등 건물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훼손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에 따른 하자 발생 및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입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 또한 계약자(입주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자(입주자)가 개별 시공한 부위의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책임은 계약자(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공사로 인한 다른 세대 피해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시공·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랜지후드는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식 소화장치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세대 중 저층부(102 주택형 및 그 하부층 포함)의 경우 외부 석재 마감으로 인해 발코니 창호 개구부까지 외부 석재가 시공되오니, 추후 창호 설치 시 석재를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관련 기준에 따른 절수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은 가능하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관리비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기 시공된 통신기기 및 난방조절기 등은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으로 초기 설정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지정기간 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안)	실내기 대수	설치위치	제조사	공급가격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입주지정일
102 / 102P / 108 / 115P / 116T	선택1	3대	거실+침실1+침실2	삼성전자	4,690,000	938,000	3,752,000
	선택2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삼성전자	6,250,000	1,250,000	5,00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삼성전자	7,660,000	1,532,000	6,128,000
115 / 118	선택1	3대	거실+침실1+침실2	삼성전자	4,690,000	938,000	3,752,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삼성전자	6,250,000	1,250,000	5,00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삼성전자	7,660,000	1,532,000	6,128,000
	선택4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삼성전자	8,780,000	1,756,000	7,024,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 납부계좌와 유상옵션금 납부계좌 및 공동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 내 침실1, 침실2, 침실3 및 거실 총 4개소에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 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드레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 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세대 내부 구조가 변경될 경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기본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은폐, 매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 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이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은 사전 선정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별도의 변경 요청이나 선택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이며, 설치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실내기 1대당 1개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하며 유선 컨트롤러는 미설치되오니 이에 대하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어플리케이션 제어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 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진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의 세부사항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 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 처리됩니다.

▣ 타입별 유상 옵션

■ 102 / 108 타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세부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위치	품목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 알파룸	중문	- 3연동 도어(화이트 사틴유리)	1,210,000	242,000	968,000
	현관 신발장	- 신발장 : 슈즈렉(조명형) + 일상화수납 (하부 조명)	2,830,000	566,000	2,264,000
	현관 바닥	- 바닥타일 : 600*1200 + 디딤판 / 걸레받이 : 엔지니어드스톤	990,000	198,000	792,000
	현관 조명	- 원형 센서등	120,000	24,000	96,000
	알파룸	- 현관팬트리 : 시스템가구 + 폴딩도어 + 원형등 - 복도장식장 : 고급 조명형 장식장(화이트 세틴 유리 + PET도어) - 주방팬트리 : 2연동 슬라이딩 유리도어(브론즈 세틴유리) + 조명형 장식장(클리어 유리) 및 수납장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주방 고급 수납장 + 원형매립등	11,390,000	2,278,000	9,112,000
벽 / 바닥	바닥	- 전실 광폭 마루	4,880,000	976,000	3,904,000
	벽	- 아트월 : 세라믹 타일 + 복도 / 거실 벽체 : 시트 판넬	4,920,000	984,000	3,936,000
거실 / 복도 / 침실	조명 특화	- 거실 우물천장 디밍 조명 + 침실1, 2, 3 디밍 조명 + 복도 간접조명 + 픽처레일 + 고급형 터치 스위치	3,850,000	770,000	3,080,000
	침실2, 3 불박이장	- 침실2, 3 : 매립형 불박이장	3,680,000	736,000	2,944,000
드레스룸	드레스룸 벽	- 벽판넬 및 시스템 선반(조명 + 서랍장 포함) + 아일랜드 수납장	4,670,000	934,000	3,736,000
	드레스룸 도어	- 슬라이딩 유리 도어 (브론즈 세틴유리)	1,480,000	296,000	1,184,000
	드레스룸 제습기	- 천장형 제습기	1,980,000	396,000	1,584,000
	화장대	- 고급 화장대 + 고급 장식장 (브론즈 세틴 유리 도어) + 디밍거울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4,780,000	956,000	3,824,000
	조명	- 드레스룸 라인 매입등 + 원형 매립등	290,000	58,000	232,000
주방	가구(옵션1)	- 빌트인 냉장고장 + 장식장 (클리어 유리 도어,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 키큰장	5,240,000	1,048,000	4,192,000
	가구(옵션2)	- 광폭 아일랜드장 + 플립형 상부장 (상하부 조명형) + 독립형 고급 렌지후드 + 쿡답 : 하츠 (인덕션 3구)	6,230,000	1,246,000	4,984,000
	벽 / 상판	-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9,400,000	1,880,000	7,520,000
	수전	- 고급형 수전 + 와이드 사각 싱크볼	740,000	148,000	592,000
	조명	- 라인 매입등 + 식탁 레일 스팟 + 고급형 터치 스위치	1,120,000	224,000	896,000
부부욕실	욕실특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디밍거울 + 욕실장 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8,400,000	1,680,000	6,720,000
공용욕실	욕실특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욕실장 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젤다이	6,690,000	1,338,000	5,352,000

구분		세부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위치	품목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 3연동 도어(화이트 사틴유리)	1,210,000	242,000	968,000
	현관 신발장	- 신발장 : 슈즈랙(조명형) + 일상화수납 (하부 조명) + 디자인신발장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4,830,000	966,000	3,864,000
	현관 바닥	- 바닥타일 : 600*1200 + 디딤판 / 걸레받이 : 엔지니어드스톤	760,000	152,000	608,000
	현관 조명	- 원형 센서등	120,000	24,000	96,000
벽 / 바닥	바닥	- 전실 광폭 마루	4,880,000	976,000	3,904,000
	벽	- 아트월 : 세라믹 타일 + 복도 / 거실 벽체 : 시트 판넬	4,970,000	994,000	3,976,000
거실 / 복도 / 침실	조명 특화	- 침실1, 2, 3 디밍 조명 + 복도 간접조명 + 픽처레일 + 고급형 터치 스위치	2,010,000	402,000	1,608,000
	침실2, 3 불박이장	- 침실2, 3 : 매립형 불박이장	3,680,000	736,000	2,944,000
드레스룸	드레스룸 벽	- 벽판넬 및 시스템 선반(조명 + 서랍장 포함) + 아일랜드 수납장	4,670,000	934,000	3,736,000
	드레스룸 도어	- 슬라이딩 유리 도어 (브론즈 새틴유리)	1,480,000	296,000	1,184,000
	드레스룸 제습기	- 천장형 제습기	1,980,000	396,000	1,584,000
	화장대	- 고급 화장대 + 고급 장식장 (브론즈 새틴 유리 도어) + 디밍거울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4,780,000	956,000	3,824,000
	조명	- 드레스룸 라인 매입등 + 원형 매립등	290,000	58,000	232,000
주방	가구(옵션1)	- 빌트인 냉장고장 + 장식장 (클리어 유리 도어,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키친장	5,240,000	1,048,000	4,192,000
	가구(옵션2)	- 광폭 아일랜드장 + 플립형 상부장 (상하부 조명형) + 독립형 고급 렌지후드 + 쿡탑 : 하츠 (인덕션 3구)	6,230,000	1,246,000	4,984,000
	벽 / 상판	-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9,400,000	1,880,000	7,520,000
	수전	- 고급형 수전 + 와이드 사각 싱크볼	740,000	148,000	592,000
	팬트리	- 팬트리 : 조명형 장식장(클리어 유리) 및 수납장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2,520,000	504,000	2,016,000
	조명	- 라인 매입등 + 식탁 레일 스팟 + 고급형 터치 스위치	1,120,000	224,000	896,000
부부욕실	욕실특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디밍거울 + 욕실장 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8,400,000	1,680,000	6,720,000
공용욕실	욕실특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욕실장 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젤다이	6,690,000	1,338,000	5,352,000

구분		세부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위치	품목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 여닫이 도어(화이트 사틴유리)	1,320,000	264,000	1,056,000
	현관 신발장	- 신발장 : 슈즈랙(조명형) + 일상화수납 (하부 조명)	4,990,000	998,000	3,992,000
	현관 바닥	- 바닥타일 : 600*1200 + 디딤판 / 걸레받이 : 엔지니어드스톤	1,140,000	228,000	912,000
	현관 팬트리	- 시스템선반 + 폴딩도어	1,360,000	272,000	1,088,000
	현관 조명	- 원형 센서등	180,000	36,000	144,000
벽 / 바닥	바닥	- 전실 광폭 마루	5,250,000	1,050,000	4,200,000
	벽	- 아트월 : 세라믹 타일 + 복도 / 거실 벽체 : 시트 판넬	6,340,000	1,268,000	5,072,000
거실 / 복도 / 침실	조명 특화	- 거실 우물천장 디밍 조명 + 침실1, 2, 3 디밍 조명 + 알파룸 디밍 조명 + 복도 간접조명 + 픽쳐레일 + 고급형 터치 스위치	4,850,000	970,000	3,880,000
	알파룸	- 2연동 슬라이딩 유리도어(브론즈 새틴유리)	1,490,000	298,000	1,192,000
드레스룸	드레스룸 가구	- 벽판넬 및 시스템 선반(조명 + 서랍장 포함) + 아일랜드 수납장 + 고급 화장대 + 디밍거울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6,550,000	1,310,000	5,240,000
	드레스룸 도어	- 슬라이딩 유리 도어 (브론즈 새틴유리)	1,890,000	378,000	1,512,000
	드레스룸 제습기	- 천장형 제습기	1,980,000	396,000	1,584,000
	조명	- 드레스룸 라인 매입등	250,000	50,000	200,000
주방	가구	- 빌트인 냉장고장 + 플립형 상부장(상하부 조명형) + 키큰장 + 광폭 아일랜드장 + 독립형 고급 렌지후드 + 쿡탑 : 하츠 (인덕션 3구)	8,840,000	1,768,000	7,072,000
	벽 / 상판	-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7,320,000	1,464,000	5,856,000
	수전	- 고급형 수전 + 와이드 사각 싱크볼	740,000	148,000	592,000
	조명	- 라인 매입등 + 식탁 레일 스팟 + 고급형 터치 스위치	1,120,000	224,000	896,000
부부욕실	욕실풍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디밍거울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7,860,000	1,572,000	6,288,000
공용욕실	욕실풍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욕실장 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젤다이	6,650,000	1,330,000	5,320,000

구분		세부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위치	품목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 여닫이 도어(화이트 사틴유리)	1,320,000	264,000	1,056,000
	현관 신발장	- 신발장 : 슈즈랙(조명형) + 일상화수납 (하부 조명)	4,990,000	998,000	3,992,000
	현관 바닥	- 바닥타일 : 600*1200 + 디딤판 / 걸레받이 : 엔지니어드스톤	1,140,000	228,000	912,000
	현관 팬트리	- 시스템선반 + 폴딩도어	1,360,000	272,000	1,088,000
	현관 조명	- 원형 센서등	180,000	36,000	144,000
벽 / 바닥	바닥	- 전실 광폭 마루	4,730,000	946,000	3,784,000
	벽	- 아트월 : 세라믹 타일 + 복도 / 거실 벽체 : 시트 판넬	5,960,000	1,192,000	4,768,000
거실 / 복도 / 침실	조명 특화	- 침실1, 2, 3 디밍 조명 + 복도 간접조명 + 픽쳐레일 + 고급형 터치 스위치	2,000,000	400,000	1,600,000
	침실 특화	- 침실3 드레스룸 : 시스템선반 + 가구도어	750,000	150,000	600,000
드레스룸	드레스룸 가구	- 벽판넬 및 시스템 선반(조명 + 서랍장 포함) + 아일랜드 수납장 + 고급 화장대 + 디밍거울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6,550,000	1,310,000	5,240,000
	드레스룸 도어	- 슬라이딩 유리 도어 (브론즈 새틴유리)	1,890,000	378,000	1,512,000
	드레스룸 제습기	- 천장형 제습기	1,980,000	396,000	1,584,000
	조명	- 드레스룸 라인 매입등	250,000	50,000	200,000
주방	가구	- 빌트인 냉장고장 + 플립형 상부장(상하부 조명형) + 키큰장 + 광폭 아일랜드장 + 독립형 고급 렌지후드 + 쿡탑 : 하츠 (인덕션 3구)	8,840,000	1,768,000	7,072,000
	벽 / 상판	-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7,310,000	1,462,000	5,848,000
	수전	- 고급형 수전 + 와이드 사각 싱크볼	740,000	148,000	592,000
	조명	- 라인 매입등 + 식탁 레일 스팟 + 고급형 터치 스위치	1,120,000	224,000	896,000
부부욕실	욕실풍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디밍거울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7,860,000	1,572,000	6,288,000
공용욕실	욕실풍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욕실장 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젤다이	6,650,000	1,330,000	5,320,000

구분		세부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위치	품목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 3연동 도어(화이트 사틴유리)	1,320,000	264,000	1,056,000
	현관 신발장	- 신발장 : 슈즈랙(조명형) + 일상화수납 (하부 조명) + 디자인신발장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7,240,000	1,448,000	5,792,000
	현관 바닥	- 바닥타일 : 600*1200 + 디딤판 / 걸레받이 : 엔지니어드스톤	1,030,000	206,000	824,000
	현관 조명	- 원형 센서등	180,000	36,000	144,000
벽 / 바닥	바닥	- 전실 광폭 마루	5,220,000	1,044,000	4,176,000
	벽	- 아트월 : 세라믹 타일 + 복도 / 거실 벽체 : 시트 판넬	6,810,000	1,362,000	5,448,000
거실 / 복도 / 침실	조명 특화	- 거실 우물천장 디밍 조명 + 침실1, 2, 3 디밍 조명 + 복도 간접조명 + 킥처레일 + 고급형 터치 스위치	3,390,000	678,000	2,712,000
	복도 팬트리	- 시스템 선반 + PIX 판넬	1,210,000	242,000	968,000
드레스룸	드레스룸 가구	- 벽판넬 및 시스템 선반(조명 + 서랍장 포함) + 아일랜드 수납장 + 고급 화장대 + 디밍거울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7,310,000	1,462,000	5,848,000
	드레스룸 도어	- 슬라이딩 유리 도어 (브론즈 새틴유리)	1,480,000	296,000	1,184,000
	드레스룸 제습기	- 천장형 제습기	1,980,000	396,000	1,584,000
	조명	- 드레스룸 라인 매입등	250,000	50,000	200,000
주방	가구(옵션1)	- 빌트인 냉장고장 + 키큰장	3,150,000	630,000	2,520,000
	가구(옵션2)	- 광폭 아일랜드장 + 플립형 상부장 (상하부 조명형) + 독립형 고급 렌지후드 + 쿡탑 : 하츠 (인덕션 3구)	5,910,000	1,182,000	4,728,000
	벽 / 상판	-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6,480,000	1,296,000	5,184,000
	수전	- 고급형 수전 + 와이드 사각 싱크볼	740,000	148,000	592,000
	조명	- 라인 매입등 + 식탁 레일 스팟 + 고급형 터치 스위치	1,120,000	224,000	896,000
	팬트리	- 2연동 슬라이딩 유리도어(브론즈 사틴 유리)	1,360,000	272,000	1,088,000
- 조명형 장식장(클리어 유리) + 수납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		3,200,000	640,000	2,560,000	
부부욕실	욕실특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디밍거울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11,200,000	2,240,000	8,960,000
공용욕실	욕실특화	- 대형타일 + 고급 세면대 + 고급 액세서리 + 복합 환풍기 + 욕실장 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엔지니어드스톤 젤다이	9,550,000	1,910,000	7,64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대금 (계약금, 잔금)	1107-021-961800	광주은행	(주)한도건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결정기간 이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자재 발주 및 시공 일정 등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추가 신청, 해제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옵션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납부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금액은 약정일 이전에 선납하더라도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입금 등으로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이 미체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마감두께, 벽체, 가구계획, 조명 및 전기·설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시공에 따라 일부 공간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가구의 형태, 크기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평면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호수에 따라 좌우대칭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 및 가전의 배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 및 모델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신제품 출시 및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종·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전시용으로 실제 시공 시 사양,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의 설계 및 컨셉에 맞추어 적용되는 품목으로, 계약자는 사양 및 가격 등에 대하여 교체, 변경 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도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 해제 시 총 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귀속되며, 공사 착수 이후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겸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시행지침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계약자가 별도로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13 단지 여건 및 유의 사항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9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해당제한 등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5.06.30)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일반사항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컷,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은 **2026년 01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직접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은 광고 및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구역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토지계획이용계획도의 개발계획 등은 관련주체 소관으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와 무관하며, 향후 동탄 2지구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도로 및 관로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협의 후 이에 적합하게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설물, 외관, 색채, 창호, 조경계획 등은 위치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옥탑부위의 외부공조시설, 조경시설 등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화성특례시청,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공급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관에 관련 내용으로 정보 제공 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 시점 등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여건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화성특례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분양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등을 본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파손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단지내 비상차량 도로를 활용 할 수 있으나, 동시 입주 등으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 주요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 및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또는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기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공사 현장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귀책 사유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환경보존, 노동조합의 파업 및 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차·보도 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은 향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도로선형변경 등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등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서에 의하며 시공과정 중 관련 법령에 의거 설계변경 될 수 있고,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타인 명의로 가입, 타인의 입주자저축을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관조명, 문주, 외부 E/V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6년 0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준공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영향평가 등에 의해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 공동주택은 토질조건 등 공사여건에 따라 최대 6개월 내외의 입주예정시기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계획은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마감사양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당사의 타 현장 및 타사 현장과의 비교를 통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공동주택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내용, 구성,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수경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설비환기구), 옥외 시설물, 문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경관조명계획 등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동탄2지구 및 단지의부여건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 주상복합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 조망,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동탄2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화성동탄(2)지구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현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탄2지구 사업진행에 따른 상위계획 변경 및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보상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 시와 달리 준공 후 도로여건이 변하여 교통소음, 교통정체 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변 도로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근 공원 등 공공용지는 개발진행 중으로 공원조성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 시점과 다르게 설계,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타 주변용지(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용지)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당해 블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인근 동탄JC측에 화성특례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거리 약4.8km, 송동 681-246, 일일 16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건식 사료화 및 일일 155톤 규모의 음식물 혐기성 소화설비)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동탄(2)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이며, 지구내·외 인접구간에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처리장), 변전소, 가압장, 배수지, 존치기업, 장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 및 각종 도시시설물, 특수학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송전탑 등이 입지하므로 조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송전탑 및 송전로의 지중화 및 시설은 불가능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진출입 가감속 차로 부분에 대하여 사업지 내 설치된 도로는 공도로 제공하고 준공 후 입주민 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도로시설물 사용권한은 화성특례시에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휨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등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구조 및 배치방향 조정 등으로 도로교통 소음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별도의 방음(벽)시설 설치는 없습니다.
- 단지 서측 약 370m 지점에 용구대로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진동, 분진 등)가 있을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사업대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지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 초등학생은 현민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에, 고등학생은 화성이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화성특례시 관내 기존 및 신설예정교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지원청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 본 사업지 인근 및 동탄2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본 공동주택 주변에 교육시설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학교 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위 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별현황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진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의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일부동의 경우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간간격은 도면상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동별진입은 단지 내 단차로 인해 1층 출입구, 1층 하부 PIT층 등으로 진입되며, 동별 진입방식은 상이합니다.

■ 단지계획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및 R.C. 구조입니다.
- 단지 외곽부에 면한 경사면 처리는 상설설계 진행에 따라 구조 및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에는 보행 안전을 위하여 난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시공되는 102P, 115P 주택형에 설치되는 옥탑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및 색채 등),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시 시공사 특화디자인 및 경관자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축소 제작되는 한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놀이터 및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관련실 급배기구, 외부 계단실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형태와 위치는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대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차, 옹벽의 높이 및 형태,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뿔칠/수성페인트/알루미늄쉬트가 혼용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뿔칠/알루미늄쉬트 혼용으로 마감되며, 석재뿔칠의 적용범위는 현장 여건에 의해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등의 이동은 불가함.)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보강토 불력**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주동과 단차 구간 이격거리는 최소 5m이상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일, 조랑,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경우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배치도, 모형에 표현된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웬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웬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분진,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743동 1호, 2호 사이 배면 / 3744동 1호, 2호 사이 배면 / 3745동 1호 측면, 1호, 2호 배면, 7호 배면 / 3746동 1호 측면 / 3749동 1호측면 / 어린이놀이터 등에 설치됩니다.
- 3745동 2호, 3호 사이 배면 / 3746동 4호 측면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재활용품 집하장 포함) 계획되어 있어 냄새,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지자체 조례와 사용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745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다목적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계획되어 있습니다.

- 3745동 주변 하부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우수조가 계획되어 있어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우수조 등 시설물의 운용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기류에 의한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기류에 의한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으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기류에 의한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에 주차장 이동 경사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1층에는 보행자 통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3745동 주변 지하층은 기계실 및 차량이동 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는 보행자 이동통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BI/CI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및 사인물 적용 시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CI 및 BI 등의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층 피트층과 면한 부위는 석재뿔칠 또는 수성페인트 마감이 적용됩니다.
- 우편물 보관함, 무인택배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형태(외벽 알루미늄시트, 석재뿔칠,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옹벽),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됩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제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공동주택 지붕(3741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일조공간제어시스템, 태양광집열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에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방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 축소될 수 있으나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조경계획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시의 도서내용을 충족하여 식재하되 그 식재위치는 식재의 생육환경과 형태,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되어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결정되며, 미술작품은 관련 법령과 심의절차를 거쳐 제작 및 설치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교목 및 관목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동 출입구의 출입문, 복도, 경사로, 계단, 난간 등은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별 대지경계선 외부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본 사업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조경식재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의 입주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발생 및 개구리 서식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거치대는 지상1층 각동 외부에 설치 됩니다.** 또한 자전거 거치대의 공간확보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742, 3743, 3744, 3747, 3748, 3749동의 116T주택형은 1층 동 출입구를 통해 전면부로 이동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1층 계단을 이용한 선큰 출입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곱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다목적실, 경로당에서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의 명칭은 분양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 마감재, 도어스펙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휘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내부벽체의 마감재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자전거보관소의 크기, 위치, 개소는 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 시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의 인근에 위치하는 일부 세대는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입주 후 입주민 불편해소(입주관리, 하자접수 및 보수)를 위해 공용공간을 시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또는 제4조)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 대상 건축물이며,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는 **3741동 옥상 인근**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공용설비 및 시스템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본 사업장 내 도시가스는 **(주)삼천리**를 통하여 공급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지로 집단에너지 의무사용대상이며, 동 건물의 난방 방식은 집단 에너지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으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EV홀 등 동과 위험구간에는 배관 동과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휨룸D.A, 환기팬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크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CCTV는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차장

- 단지의 주차장은 전체 지하주차장으로 램프구간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 되어있으며, 주차장은 공동주택 지하 **296대**, 근린생활시설 3대, 총 **299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세대와 지하주차장 간 거리에 따라 차량 이동 시 램프 구간 이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구성으로 일반/확장주차 235대, 경차주차 29대, 장애인주차 18대, 환경친화적 주차 17대입니다. 각 주차별 위치는 설계상에 따라 동별 앞, 뒤 주차대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가 다릅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썬큰**, 환기팬D.A 등)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는 1개소 입니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별도로 구획되어있으나 진출입 도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진입가능 층 주행통로의 유효높이는 2.7m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설비등의 노출로 인한 일부 2.7m 미확보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며, 유효높이 미확보 구간은 택배차량, 사다리차량,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차량 주차면의 높이는 2.1m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공동주택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단차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3742동, 3743동, 3744동, 3747동, 3748동, 3749동은 출입 위치에 따라 정면측 출입 시 지하 1층, 후면측 출입 시 T1층으로 연결됩니다.
- 116T주택형은 지하주차장과 세대 간 단차로 인하여 세대 출입 시 전면부에 주차한 경우 엘리베이터 또는 비상구 계단을 통해 B1F 중층으로 이동한 후 선큰(Sunken)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후면부에 주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큰(Sunken) 계단 또는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741동, 3745동, 3746동 B1F 주차장 에서만 출입가능

※ 3742동, 3743동, 3744동, 3747동, 3748동, 3749동 B1F, B1F 중층 전층 출입가능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테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인허가 도면에 의거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공사중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표지판 및 전기자동차 외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완속충전기 4개소, 과급형콘센트 27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용량 및 관련법규에 따라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전기차주차면은 지하층 전층에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치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지하층 바닥레벨은 지하주차장 설비설치에 따른 레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공동주택과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구와 통로는 공동주택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출입구를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조망권·환경권·악취 및 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공통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 반전된 미러형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붙박이장, 주방가구, 가전설치 위치, 콘센트 및 스위치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천장높이는 거실기준 **2,400mm**입니다.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침실2 또는 침실3에 세대분전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다용도실 및 발코니 벽면에 측벽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일반 비내력벽(건식벽체)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욕실거울, 욕조)의 후면 또는 측면, 바닥면, 천장과 접하는 비노출면과 거울 후면을 포함한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도배, 타일, 마루)을 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로 마감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일반 조적벽은 옹벽 또는 경량벽으로 비내력은 조적벽 또는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정 등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구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시공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동일시공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법규의 변경, 해석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변경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주자는**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시공사가 시공하고 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부위인 안방발코니 내측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 외측은 **미설치**되고, 주방발코니 내측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 **PVC도어**, 외측은 **미설치** 예정입니다.(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샷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실 시공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급·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실외기실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창호

- 외부창호 프레임의 색상은 외측은 **흑색**, 내측은 시트지가 시공될 예정입니다.(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 색상이 **변경 될 수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루버창은 외부도장과 연계해서 일부세대에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각 실별 창호사이즈는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등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기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락

- 다락방에는 냉·난방 설비 및 환기설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락방 지붕 하부는 결로방지 단열재가 추가 시공될 경우 다락방 사용 공간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102, 115, 116T 주택형), 옥상(102P, 115P 주택형), 썬큰(116T)

- 본 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테라스와 다락, 썬큰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테라스와 다락은 각층 해당 세대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단, 본 주택의 테라스와 다락, 썬큰은 각층 해당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건축 면적, 대지 지분 등 등기상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계약 체결 이전 관련 도서의 상세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계약 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 또는 법적 문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같은 타입의 세대라도 테라스의 크기와 형태는 위치별로 다를 수 있고, 각 층의 테라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라스 세대는 구조적 특성상 일조량 및 채광이 일부 불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계약 이전 이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각층 해당 세대의 테라스 진출입 시 실내 외부의 단 차이 또는 빗물 침투 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 등에 따른 사고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사고 등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테라스와 다락(최상층 세대에 한함)의 독립적 이용을 각층 해당 세대에 제공한 사안이나, 관련 목적에 반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행위 일체를 하실 수 없으며,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 일체는 입주민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각 동별 옥상은 공용 공간으로 개별 전용 공간은 아니나, 구조상 옥상에 설치된 다락방 세대를 통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옥상에 설치된 다락방 세대의 사생활 보호나 방법 문제 등을 이유로, 공공 관리 목적이 아닌 개인 사유로 인한 옥상의 임의 출입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테라스와 다락, 썬큰은 개인 사유로 인한 출입이 제한되나, 공공 관리를 목적으로 관리자 등 관리 주체의 점검 통보 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사안으로 인한 출입이나 점검 또는 보수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테라스 본래 기능에 반하는 시설물이나 중량물 등 하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다른 세대에 피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 시설 등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테라스와 다락, 썬큰에 집중 호우 또는 강설 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후 테라스의 일부 구조 변경으로 인한 테라스 바닥 높이 변화로 발생하는 물 넘침 또는 낙엽 등 오염물로 인한 물 막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길 바라며, 입주자가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외부 공간(테라스) 건축 기본 마감 외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 중 발생한 하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입주자는 외부 공간(테라스) 상부의 허용 하중, 방수, 배수 등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민은 공사 이전 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 등으로 동의를 구하고, 이후 인접 세대에 별도의 통지 등으로 동의를 구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 체결 이전 단지 내부, 외부 등 설계나 구조 여건, 주거 환경 등 계약 관련 사안 일체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관련 사안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주민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이 제3자에게 매매 시 상기 내용 일체를 매매계약서에 기재 후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그 제3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와 분쟁이나 다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 116T 주택형의 경우 침실3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조 및 채광에 일부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745동 102 주택형(101, 102, 104, 105, 106호)의 테라스 규격은 건본주택에 시공된 규격과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실제 시공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환기시설, 통기배관 등은 각 라인별 옥상 공용부 및 조경부에 설치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또는 PP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공용, 부부)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동간 사생활보호를 위해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라믹 타일 및 인조강화석 주방 상판·벽체는 제품 특성상 색상 및 나뭇 부위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 또는 SD도어는 본 시공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제품사양은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크기,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강마루 바닥재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조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우드패턴 및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구(발코니 등)의 사양, 크기, 개폐방향 및 손잡이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벽체로써, 조적벽이나 콘크리트벽보다 방음효과가 떨어지므로 실별로 다소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벽걸이형TV, 선반, 기타중량물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의 별도 보강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가스배관과 간섭되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 온수분배기 주변의 바닥 및 벽체 노출부위가 있을 수 있으며,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축소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악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타입 세대 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의 드레스룸 및 현관의 일부 건식벽체는 추가 및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기계설비/전기설비

- 본 공동주택은 지역난방방식으로 설계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배관 또는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일부 욕실바닥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원활한 공기 순환을 위한 실외기 높이 확보)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어시스템 및 온도조절기 등은 상황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주방발코니) 외부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되며, 가스계량기는 다용도실(주방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 DA(환기구)가 각 주동 지하층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환기장치 가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장치 설치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욕실에는 욕실 스피커 폰 시공될 예정이며, 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전동형 빨래 건조대 설치될 경우, 발코니 전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동체 감지기는 전층 세대에 설치됩니다.
- 벽걸이 TV 설치시 전선, 케이블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세대 내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합니다. 본 주택은 연립주택으로 하향식 피난구 및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항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주방발코니)의 천장 높이 및 바닥 단 깊이 등은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의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몰딩의 형태는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도배지는 하자 방지를 위하여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건본주택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가구 및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선택품목(유상)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 유닛,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설치)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조경 및 식재, 차·보도 선형,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갯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사양, 개수, 위치) 설치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 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대표세대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좌우 반전(미러형)된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 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 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건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을 통해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건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 관련 제품과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116㎡(116T), 102㎡(102)**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홍보 제작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 및 갈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지하주차장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호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7.2M	2.7M	3.0M

■ 마감자재목록표

-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건분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홈페이지(<https://www.동탄gwen160.com>)에 게시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2,938,117	-	
			기간이자	3,878,774	-	
			필요적경비	2,129,987	-	
			그밖의 비용	266,846	-	
			계	49,213,724	-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065,722	-	
			흙막이공사	-	-	
			비탈면보호공사	-	-	
			옹벽공사	125,902	-	
			석축공사	-	-	
			우수,오수공사	146,763	-	
			공동구공사	90,889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40,295	-	
			도로포장공사	333,012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35,012	-	
			정화조시설공사	-	-	
			조경공사	620,957	-	
			부대시설공사	382,207	-	
			공통가설공사	-	-	
			건축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1,564,758				-
	철근콘크리트 공사	10,650,317				-
	용접공사	-				-
	조적공사	1,060,852				-
	미장공사	2,595,776				-
	단열공사	291,732				-
	방수, 방습공사	901,725				-
	목공사	1,113,896				-

		가구공사	1,485,194	-
		금속공사	954,768	-
		지붕 및 흙통공사	318,255	-
		창호공사	2,383,605	-
		유리공사	1,060,852	-
		타일공사	1,432,152	-
		돌공사	497,275	-
		도장공사	1,044,278	-
		도배공사	1,070,799	-
		수장공사	547,001	-
		주방용구공사	689,555	-
		그 밖의 건축공사	2,728,414	-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520,866	-
		급탕설비공사	90,385	-
		오·배수설비공사	366,642	-
		위생기구설비공사	537,653	-
		난방설비공사	432,890	-
		가스설비공사	372,012	-
		자동제어설비공사	-	-
		특수설비공사	-	-
		공조설비공사	-	-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5,619,698	-
		정보통신공사	5,115,116	-
		소방설비공사	5,365,759	-
		승강기공	361,546	-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262,515	-
		이윤	1,135,239	-
		계	57,571,456	-
	간접비	설계비	848,430	-
		감리비	590,262	-
		일반분양시설경비	1,143,425	-
		분담금 및 부담금	408,689	-
		보상비	-	-
		그밖의 사업비성 경비	4,815,704	-
		계	7,806,510	-
		그 밖의 비용	39,743,510	-
		합 계	154,335,200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위 : 원]

항목	심사결과금액
----	--------

택지비 가산비	택지비 기간이자	3,878,774,025	
	제세공과금	2,129,987,221	
	택지와 관련된 경비	266,846,468	
	소계	6,275,607,714	
건축비 가산비	구조형식 가산비(지상층)	1,347,401,173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512,384,042	
	인텔리전트 설치 추가비용	홈 네트워크 설치비	1,978,952,360
		초고속통신특등급	799,906,030
		에어컨 냉매배관	873,202,020
		기계 환기설비	1,857,014,940
	특수형태 가산비	11,847,155,85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115,720,974	
	지하 주차장 층고증가 공사비	440,936,270	
	지반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8,348,580,027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4,487,045,482
	법령·조례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8,527,200
	사업승인 조건 충족 가산비	흡착,흡방습 친환경재료	3,757,659,380
	건축특화	외관특화공사비	2,023,266,410
		법정초과조경설치비	307,372,884
	안전관리비		27,000,000
	분양보증수수료		289,043,757
소계		40,021,168,799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심의 시 지하 세대창고 면적을 지하건축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해당 면적을 법정 초과 복리시설로 환산한 금액을 제외하여 최종 공급금액에 반영하였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1.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전기부분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스마트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26-101-010 호
<p>이 건물은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p>		
신청인	이름	(주)한보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 8층 (여의도동)
건축물	이름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B11 연립주택 신축공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신동 720
	구분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홈IoT)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p>2026년 03월 04일</p> <p>서울전과관리소장 </p>		

구분	건설사업관리	전기 감리	소방 감리	통신 감리
상호	(주)유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팔마기술단(주)	팔마기술단(주)	팔마기술단(주)
금액	1,002,450,900원	66,000,000원	286,000,000원	44,000,000원

※ 감리회사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본 공동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6-101-0001700 호	100,317,88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중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한토건설과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한토건설임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시행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한토건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 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한토건설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한토건설에게 있음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코리아신타(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자는 반드시 코리아신타(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6.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한토건설 또는 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7. 코리아신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한토건설과 계약자 간에 “별도의 특약” 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타(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8.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한토건설	110111-15687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8층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타 (주)	110111-2937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 공식 홈페이지 안내 : <https://www.동탄gwen160.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